

의안 번호	제3733호
----------	--------

##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11월 17일 유매희 의원, 한종우 의원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12월 0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12월 15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12월 15일

### 2. 제안이유

-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군인 중심의 농촌 대민봉사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,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제도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함.
-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농촌 대민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 함으로써 안전한 대민봉사 환경조성과 군인의 농촌 대민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)
- 나.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- 다. 보험 계약체결 및 가입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)
- 라. 보험료의 청구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9. 주문사항 : 없음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